

바)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(「국가공무원법」)

- (1) 제58조 : 직장 이탈 금지
- (2) 제64조 :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
- (3) 제65조 : 정치 운동의 금지
- (4) 제66조 : 집단 행위의 금지

사)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(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)

- (1)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 6. 8. >

(가)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

- ①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
- ②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③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(나)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년

(다)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3년

※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)

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-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

(2)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(3) 징계위원회의 구성·징계의결등, 그 밖에 절차상의 흡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(過多)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아)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(「교육공무원징계령」 제2조)

(1)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,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.

(2)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(가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2조 제2항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2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

(나)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